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2021. 4. 21.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김규식

### 1. 발 의 자: 황선화 의원

### 2. 제안이유

코로나19로 인한 배달과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으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, 교육과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의 방지에 이바지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·제공의 제한 등(안 제5조)
- 다.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등(안 제6조, 제7조)
- 라. 실태조사(안 제8조)
- 마. 교육과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, 제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협조부서: 청소행정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(2021. 4. 2. ~ 4. 7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표창까지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추진계획 수립, 1회용품 사용·제한 등(안 제4조 ~ 안 제5조)
  -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 하도록 함
  -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·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함
- 자발적 협약의 체결,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등(안 제6조 ~ 안 제7조)
  -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
  -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자원순환우수업소로

선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, 우수업소 지정 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

- **실태조사, 교육, 지원 및 홍보 등(안 제8조 ~ 안 제10조)**

-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

- 안 제10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방안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함

- **행정적·재정적 지원, 표창(안 제11조 ~ 안 제12조)**

- 안 제11조에서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안 제12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

○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음식 배달과 온라인 쇼핑 및 택배,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각종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

○ 코로나19 생활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자료<sup>1)</sup>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 전체 양은 전년 대비 18.1% 증가했으며 플라스틱류 또한 9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, 생활쓰레기를 묻을 매립시설은 처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소각시설도 줄어들고 있어 국내 쓰레기 문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.

1) 2020년 통계청 발표 자료

- 이러한 상황에서,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, 제34조의8(자발적 협약의 체결)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1회용품)<sup>2)</sup>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, 실태조사,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.
- 한편,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,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지속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, 관리 감독 및 지원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--

2) [붙임 1], [붙임 2] 참고

[ 부임 1 ]

**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약칭: 자원재활용법)**

**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6.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
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경우
2.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
3.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34조의8(자발적 협약의 체결)**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·재활용사업자·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(이하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·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[ 부임 2 ]

###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자원재활용법 시행령)

**제5조(1회용품)** 법 제2조제1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 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#### 1회용품(제5조 관련)

- 1회용 컵·접시·용기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)
- 1회용 나무젓가락
-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)
- 1회용 수저·포크·ナイ프
-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·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 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한다)
- 1회용 면도기·칫솔
- 1회용 치약·샴푸·린스
- 1회용 봉투·쇼핑백(환경부장관이 재질, 규격, 용도,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)
- 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)